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('24.1.23.)되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고,

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신설(제41조의2 제1항)

나.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·징수 사전통지 신설(제41조의2제2항)

다. 법 제 15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·징수 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(제41조의3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법무부와 합의예정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을 각각 제41조의3 및 제41조의4로 하고,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1조의2(이행강제금의 부과·징수) ①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.

②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제41조의3(종전의 제41조의2) 중 “법 제10조의4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”을 “다음 각 호의”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10조의4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
2. 법 제15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·징수에 관한 사무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1조의2(이행강제금의 부과·징수)</u> ①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. ②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<u>제41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</u>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(제3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법 제10조의4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<u>결격사유 확인에 관한</u>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	<u>제41조의3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</u> ----- ----- ----- ----- 다음 각 호의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제41조의3</u> (생 략)	----- --- 1. <u>법 제10조의4에 따른 불법감</u> <u>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</u> <u>확인</u>에 관한 사무 2. <u>법 제15조의4에 따른 이행강</u> <u>제금 부과·징수에 관한 사무</u> <u>제41조의4</u> (현행 제41조의3과 같 음)
--	--